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목 차

제1편 2018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 · 방법	1
제1장 경영실적 평가개요	3
제1절 의의	5
제2절 평가절차	5
제2장 경영실적 평가기준	7
제1절 평가유형 구분	9
제2절 평가지표 체계	11
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16
제3장 경영실적 평가방법	29
제1절 지표별 평가방법	31
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43
제3절 외부 평가·감사 결과 등의 연계·활용	50
제4장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51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53
제2절 후속조치 등	54

제 1 편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제 1 장

경영실적 평가개요

제1절 의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제2절 평가절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률 제47조에 따라 2019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각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실적에 대해 법률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다.
 - 평가 과정에서 경영전략, 리더십, 조직·인사 일반 등 기관장 역량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기관장 평가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

제 2 장

경영실적 평가기준

제1절 평가유형 구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8년도 경영실적은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준정부기관 중의 일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유형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강소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		유형구분 기준
공기업	공기업 I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기관
	공기업 II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위탁집행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강소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2016년말 기준)

-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평가유형구분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 지정된 경우 평가 유형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유 형		기 관 명
공기업 (35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25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 기관 (88개)	기금 관리형 (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형 (36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39개)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밑줄 친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기관임

제2절 평가지표 체계

1. 기본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한다.
-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비, 협력과 참여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평가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비계량 또는 계량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지표는 평가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한다.
- 정부혁신로드맵 확정 이후 수립 예정인 공공기관혁신방안에 따라 혁신관련 지표의 구성 및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2. 유형별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① 공기업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 경영개선		2	
	-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4	8
	- 일자리 창출	7	4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3	1
	- 안전 및 환경	3	2	1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업무효율	5		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6	3
	- 조직·인사 일반	3	3	
	- 재무예산 운영·성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	2	3 (1)
-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1	1		
5.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6. 협력과 참여	5	1	4	
- 국민참여	1	1		
- 열린혁신	1		1	
- 국민소통	3		3	
소 계	55	32	23	
주요 사업 (4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45	18	27
	소 계	45	18	27
합 계		100	50	50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결측 처리

②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 경영개선		2	
	-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2	8
	- 일자리 창출	6	3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 안전 및 환경	3	2	1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5	1
	- 조직·인사 일반	3	3	
	-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	1
	- 삶의질 제고	1	1	
4.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5. 협력과 참여	5	1	4	
- 국민참여	1	1		
- 열린혁신	1		1	
- 국민소통	3		3	
	소 계	45	29	16
주요사업 (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5	21	34
	소 계	55	21	34
합 계		100	50	50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

③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0)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 경영개선		2	
	-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2	8
	- 일자리 창출	6	3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 안전 및 환경	3	2	1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5	6
	- 조직·인사 일반	3	3	
	-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5
	- 삶의질 제고	1	1	
4.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5. 협력과 참여	5	1	4	
- 국민참여	1	1		
- 열린혁신	1		1	
- 국민소통	3		3	
	소 계	50	29	21
주요사업 (5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50	21	29
	소 계	50	21	29
	합 계	100	50	50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결측 처리(기금운용관리 및 성과는 제외)

4 유형별·기관별 평가지표 조정

-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범주 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 기관별 협업·혁신·시민참여 우수사례의 성과 반영은 2018년도에 선정된 과제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최대 1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가산하고, 우수 협조기관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가점을 부여(최대 0.2점)한다.
-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금관리형 및 강소형 기관은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의 평가 항목의 일부를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해당유형에 맞게 평가지표와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평가지표는 유형 내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주요사업 범주의 평가지표는 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 계량지표 점수는 지표별, 기관 유형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고득점기관과 최저득점기관의 점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할 수 있다. 표준화 여부 및 방법 등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1. 경영관리 범주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전략기획	지표정의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핵심 업무와의 연계성, 국정과제 반영 여부 등 확인

(2) 경영개선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경영개선	지표정의	•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관의 기능조정(취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상 기관의 경우에는 기능조정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확인 ②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라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3) 리더십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리더십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 동기부여, 경영계약 이행 노력·성과,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선정 및 중장기·연도별 목표수준의 적정성, 경영계약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경영계약 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②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일자리 창출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선택제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1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17.10.25.)」 상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 일자리 창출 관련 계량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2점) *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1.1~1.7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0.3~0.9점)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 비계량 4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이의 지속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 교대제 변경,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및 탄력정원제 실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기관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한 전환의 난이도 및 목표 초과 달성,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등 고려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p>④ 기관의 핵심사업 및 조달·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p> <p>* 사내벤처 활성화 등 혁신적 수단을 통한 직접적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금융지원, 컨설팅 등 간접적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p> <p>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혁신적 노력, 협력과 공유를 위한 성과</p> <p>* 기술혁신, 신규사업 발굴, 협력기업과의 기술 및 성과 공유, 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일자리 콘테스트 등), 일자리 관련 공익단체·법인과의 협력 등</p>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p>지표정의</p> <p>•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p>
	<p>적용대상(배점)</p> <p>•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p>
	<p>세부평가내용</p> <p>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 (총 합계 1점)</p> <p>- 장애인 의무고용(0.3~0.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0.5),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0.2~0.4)</p>
	<p>지표정의</p> <p>•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p>
	<p>적용대상(배점)</p> <p>• 공기업 : 비계량 3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p>
	<p>①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p> <p>*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노력 여부</p> <p>②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p> <p>* 청년고용 준수 여부, 고용디딤돌, 고졸채용 확대, 비수도권 인재 채용·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 채용 비율 달성 노력 여부</p> <p>③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인력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p> <p>* 여성관리자: 본부직제상 부서장 임용이 가능한 직급</p> <p>④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p>

(3)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안전 및 환경	지표정의	• 안전한 근로환경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안전 및 환경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1점)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0.2~0.8), 녹색제품 구매실적(0.2~0.8)
	지표정의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등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난·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②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 정보보호 피해건수,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국가정보원) 결과 등 ③ 기관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예방적 접근과 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정의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① 상생과 협력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3점) * 중소기업생산품(0.4~1.0), 기술개발생산품(0.2~0.4),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0.2~0.4),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0.3~0.5), 여성기업생산품(0.2~0.4), 장애인생산품(0.4~0.8), 국가유공자생산품(0.2~0.4), 재정조기집행(0.3~0.5)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및 지역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 이용(중소기업에 어린이집 개방 등)·편의제공 노력과 지원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지역 및 국제행사(평창동계올림픽 등) 참여 등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지급율 확대,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지킴이 활용, 직불 조건부 발주, 표준계약서 활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 여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공유제 활성화, 물품·용역·발주·공사 참여 확대, 판로지원, 핵심기술보호, 공동 연구개발 확대 노력, ‘동반성장 평가 결과(산업부)’ 등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구매확대 등 기관의 노력과 성과

(5) 윤리경영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윤리 경영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 등) 마련·운영 여부, 비윤리적 행위 신고, 교육 실적 등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③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성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자율준수체계, 윤리·준법 상담, 내부감사 결과 및 사후관리 등 내부건제활동 실적 및 성과 ④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 *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 근로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③ 업무효율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업무효율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효율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 계량 5점
	세부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부평가지표는 업무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의 지표 중에서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② 세부평가지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4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조직·인사 일반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핵심 업무를 고려한 기관 내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연·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출연·출자시 정부 사전 협의 등 적정절차 준수 여부, 출자회사 진단에 따른 개선·구조조정 노력 및 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조직·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 기관 특성에 따른 개방형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의 운영, 순환보직 원칙 수립 등

(2) 재무예산 운영·성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예산) 안정성, 투자 및 집행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 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평가지표는 재무예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의 지표 중에서 각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② 세부평가지표의 예시 - 부 채 비 율 = $\frac{\text{부채}}{\text{자본}}$ -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금융비용}}$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된 목표부채 비율 등의 달성 여부 등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 비계량 2점, 준정부기관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 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투자계획이 반영된 기관은 혁신성장 등 중장기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 확인 ②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미래위험 예측 및 대응, 부채 및 유동성 관리, 효율적 자산운용, 재무구조개선 계획 운영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 - [구분회계 도입기관] 사업단위별 성과분석 등 구분회계 정착 및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③ 사업선정의 타당성 확보(예비타당성 조사 등)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④ 재무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부채감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의 적정성과 이행노력 - 부채감축을 위한 조직, 제도, 모니터링 체계 운영노력 및 성과 - 자본 확충 및 금융 부채 감축 노력과 성과 - 정부 제시 구조조정 이행노력과 성과 -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성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p>* 재무중점관리기관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중 부채비율 300% 이상이고 3년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관(2016년말 기준, 금융형 공공기관 제외)</p> <p>⑤ 원가 및 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및 성과</p>

(3) 삶의 질 제고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삶의 질 제고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1점)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p>①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과 취약근로자(임산부·장애인 등)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p> <p>②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p> <p>* 가족친화인증 여부, 자동육아휴직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이용률,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활용실적 등</p>

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복리후생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보수·복리 후생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p>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p> <p>- 직무가치, 능력, 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단계적·점진적 추진 노력 및 성과</p>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p>* 정규직 전환자, 신규입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적용 노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구성 등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체계 설정 노력 및 성과 - 합리적인 직무평가 결과의 반영, 지나친 연공성 개선 노력 및 성과 <p>②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편성 및 집행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특별휴가, 퇴직금, 복무행태, 고용세습 등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개선 실적 및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의 존재 여부 - 전년대비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p>③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구조, 임금체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임금피크제 유형, 적용대상, 임금조정기간, 임금지급률, 직무개발 등 제도설계의 적절성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 임금피크 대상자의 활용도 등 운영 효과 - 임금피크제 관련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절성

(2) 총인건비 관리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총인건비 관리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p>① 총인건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p> <p style="text-align: center;">- 총인건비 인상률 = $\frac{\text{평가년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p> <p>② 총인건비의 정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름</p>

(3) 노사관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노사관계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노사간 협의체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②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

㉔ 협력과 참여

(1) 국민참여 및 열린 혁신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국민참여 및 열린 혁신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에 국민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참여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채널을 제도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및 데이터 공유로 국민참여 기반 강화 ② 국민 참여와 소통이 기관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 등 소통의 성과와 환류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국민제안,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과제의 발굴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열린혁신 추진전략과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② 혁신 추진 전담조직, 모니터링 및 환류 등 안정적인 추진체계의 구축 및 전문성 확보 노력 ③ 우수과제 발굴 및 실행체계 구축 ※ 세부평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2) 국민소통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국민소통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p>① 경영정보공시 점검 평가대상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경영공시항목 <p>② 세부평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p>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만족도, 국민체감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 국민체감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의 수준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p>① 평점은 고객만족도 지수, 국민체감도 지수, 사회적 가치 기여도 지수를 7:2:1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강소형 기관은 고객만족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 점수로만 산출)</p> <p>* 고객만족도, 국민체감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결과 중 일부가 없는 경우 해당 점수는 결측치로 처리</p> <p>② 고객만족도 지수, 국민체감도 지수, 사회적 가치 기여도 지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p>

2. 주요사업 범주

①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 비계량 12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14점
	세부평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였는가?

②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성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 비계량 6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7점
	세부평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목표 수준의 도전성